

# 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2014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·세출 결산,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	감사담당관	1

( 2015. 6. 22 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

**[ 전문위원 김 은 모 ]**

# 2014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·세출 결산,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

## 1. 안 건 명

- 2014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·세출결산,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

#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일(화)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3.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

- 2015년 6월 5일(금)

## 4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(결산)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82조(결산승인)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9조(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)

[검토보고]

## 2014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·세출결산,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

### 1.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

(단위 : 원)

부서명	예산현액	지출액	다음년도 이월액	집행잔액	예산현액 대비	
					집행율	불용율
합 계	233,656,000	203,831,290	0	29,824,710	87.2	12.8
감사담당관	233,656,000	203,831,290	0	29,824,710	87.2	12.8

(1) 개요

○ 예산액 : 2억 3,365만 6천원 [ 예산현액 : 2억 3,365만 6천원 ]

○ 지출액 : 2억 383만 1,290원

○ 집행잔액 : 2,982만 4,710원 - 불용율 12.8%(전년도 10.1%)

(마포구 일반회계 2014년 불용비율 7.7%)

### 2.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

(단위 : 원)

부서명	집행잔액	원인				
		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	예산절감	예산집행 잔액 (낙찰차액 등)	보조금 집행잔액	예비비
합 계	29,824,710	900,000	3,125,880	25,798,830	0	0
감사담당관	29,824,710	900,000	3,125,880	25,798,830	0	0

(1) 집행잔액 사유별 구분

○ 집행 잔액 : 2,982만 4,710원 - 불용율 12.8%

▶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: 90만원

▶ 예산절감(유보액) : 312만 5,880원

▶ 예산집행 잔액(낙찰차액 등) : 2,579만 8,830원

### 3.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 현황

(단위 : 원)

부 서	단위사업명	예산현액	지출액	2014년 이월액	집행 잔액	불용 비율(%)
감사담당관	투명하고 신뢰받는 규정운영(기타보상금)	1,000,000	0	0	1,000,000	100.0
	구민 안전보호 및 증진(일반운영비)	8,700,000	2,428,400	0	6,271,600	72.1
	업무추진비(시책업무추진비)	1,000,000	66,000	0	934,000	93.4
	읍부즈만 운영(사무관리비)	7,000,000	639,900	0	6,360,100	90.9

## [검토의견]

### <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·세출결산 현황 >

-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,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2억 3,365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2억 383만 1,290원이 지출되었고, 예산현액 대비 약 12.8%에 해당하는 2,982만 4,7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, 전년도의 10.1%와 대비하면 불용액 발생비율에 있어서 2.7% 증가하였음.
- 집행 잔액(불용액) 2,982만 4,710원에 대한 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90만원, 예산절감 312만 5,880원 그리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,579만 8,830원이 되겠음.
-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 잔액 현황을 보면
  - 1) 투명하고 신뢰받는 규정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 및 공금 횡령 또는 유용 등 부조리가 신고 되었을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2014년도 부조리 민원신고가 없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음.

< 보상금 지급기준(조례 제8조 관련 [별표])>

구분 번호	지 급 기 준	보상금
1	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	100만원 이내
2	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	50만원 이내
3	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	20만원 이내 최저 10만원

2)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627만 1,600원(사무관리비 : 244만 7,600원, 행사운영비 : 382만 4,000원) 및 시책업무추진비 : 93만 4,000원은 인권관련 업무 추진 시 이해관계 단체 간 충돌 및 집단 민원발생 등에 대한 우려로 사업이 축소되어 남은 예산임.

<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축소사유>

- 일부 인권·시민단체의 성소수자 문제 정치 쟁점화 시도로, 서울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갈등과 충돌 야기
- 인권위원회 구성에 따른 기능 중복 및 실효성 문제 등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움.

○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구민의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옴부즈만 운영 사무관리비 636만 100원은 옴부즈만 운영수당 미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임.

< 옴부즈만 제도 시행 지연 및 운영수당 불용 사유>

- 당초 2014년 하반기부터 옴부즈만 운영을 시작하려 하였으나, 2014. 9월 「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정 심의가 보류되어 2014. 10월 재심의 후 제정·공포되었으며
- 2015년 1월부터 옴부즈만을 운영하게 되어 운영수당 예산이 불용하게 되었음.

- 검토의견으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100만원은 보상금이란 구민의 불편사항과 행정기관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잘못 시행되어 오던 행정에 대한 고발을 하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올바른 구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,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부조리 신고가 한 건도 접수가 안 되어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것은 구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과 구민들이 구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신고 시 불이익 초래 등을 우려하고 또한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 따라서 내 고장 마포 및 지역 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보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보상금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-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627만 1,6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93만 4,000원은 인권관련 업무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 단체 간의 충돌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 축소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으로 현안 과제인 인권위원회 구성 문제 등 해결 추이를 보아 가면서 서울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있게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.
- 옴부즈만 운영 사무관리비 636만 100원은 2014.4월 「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되었으나, 2014. 9월 동 조례 시행규칙이 심의중 보류되었다가 2014.10월 재심의 후 제정·공포되어 옴부즈만 제도 시행 지연으로 옴부즈만 운영수당 미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, 특히 마포구 옴부즈만은 2015년도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처리하는 고충민원상담 및 청렴계약 감시 평가의 사례를 상담내용 및 유형별로 정리한 “옴부즈만 활동 사례집”등을 만들어 향후 구청 행정부서와 구민 간에 발생한 민원해결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충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옴부즈만 운영수당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, 그 밖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